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97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임호선·문대림·전진숙

정준호 · 오세희 · 송재봉

이원택 • 이춘석 • 권향엽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에 대하여 순국선열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시설 외에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묘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4항 중 "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"을 "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"로, "순국선열의"을 "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애국지사와 그 배우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애국지사의 배우자가 그 애국지사와 함 께 유골의 형태로 안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	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		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	4		
서에도 불구하고 <u>「독립유공자</u>	「독립유공자		
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	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		
호에 따른 순국선열로서 이 법	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-		
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			
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			
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			
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			
<u>순국선열의</u> 영정이나 위패와	순국선열 또는 애국지		
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다.	사의		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		